

군산시 공고 제2018-1598호

공 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군 산 시 장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국비 예산의 교부조건이 연내 상품권 발행물량 소진으로, 상품권 유통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어 판매기간이 제한적임에 따라,
- 나. 2018년도 상품권 구입 한도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수정 (현행)판매대행단체 ⇒ (개정)환전대행단체 (안 제2조)
- 나.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안 제3조)
- 다. 가맹점 대상 확대를 위해 상품권 사용대상 규정 일부 삭제 (안 제5조)
- 라. 가맹점 신청 및 지정으로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내용 삭제 (안 제6조)

- 마.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가맹점 환전 한도 상향 (안 제11조)
- 바.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월간 구매한도 상향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0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k9949012@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전화 : 063-454-2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한다.

제9조 제목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을 “(**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판매대행단체**”를 각각 “**환전대행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우 2018년도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월간 구매한도를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6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18년 6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판매대행단체</u>”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p> <p>5.·6. (생략)</p> <p>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u>판매대행단체</u>,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전대행단체</u>” ----- ----- -----.</p> <p>5.·6. (현행과 같음)</p> <p>7. ----- <u>환전대행단체</u>----- -----.</p>
<p>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생략)</p> <p>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u>한다</u>.</p> <p>③·④ (생략)</p>	<p>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하며</u>, <u>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p> <p>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산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1.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u></p>	<p>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p> <p>① ----- ----- -----.</p> <p><삭제></p>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생략)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산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산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 시설 등

② (생략)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2. (현행과 같음)

3. 군산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
----- 환전대행단체-----

-----.

② 환전대행단체-----

-----.

③ 환전대행단체-----
-----.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 환전대행단체-----
-----.

수 있다.

② (생략)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우 2018년도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월간 구매한도를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8-1598호

공 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군 산 시 장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군산사랑 상품권 관련 단체 용어 수정으로 조문 이해 편리 도모 및 가맹점 지정 간소화

2. 주요내용

- 가. 용어 수정 (현행)판매대행단체 ⇒ (개정) 환전대행단체
- 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의 협약은 상호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서식 불필요, 별지 제1호 서식 삭제(제3조)
- 다. 가맹점 신청 및 지정으로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내용 삭제(제5조)
- 라. 별표 2 가맹점 준수사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0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k9949012@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전화 : 063-454-2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을 “군산시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관기관”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각각 “환전대행단체”로 한다.

별표 2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팀장”을 “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5조제2항과 관련)**

제1조(총칙) 군산시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군산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산시장은 가맹점이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산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군산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담당자	계장	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p> <p>①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u>판매대행단체</u>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u>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p> <p>① ----- ----- <u>환전대행단체</u>----- ----- <u>군산시와</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u>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5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 ----- ----- ----- <u>제출</u>----- ----- ----- -----.</p> <p>② ----- ----- <u>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u>-----.</p>
<p>③ (생략)</p> <p>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생략)</p> <p>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보</u>-----</p>

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
 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
 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
 · 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
 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판매
 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
 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
 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기간-----

 -----.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

 ----- 환전대행단체-----
 -----.

② ----- 환전대행단체-----

 -----.